

의안번호	2125708
의 퇴 인	권명호 의원
회 답 일	2023. 12. 27.
추계번호	23A4923
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34조 (예산안의 첨부서류)	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의 첨부서류 추가 -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에 따라 신설되거나 예산액이 증액된 사업과 관련되는 성과에 대한 별도 보고서	의무규정
	안 제85조의7제2항 (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제출)	중앙관서의 장의 예산요구서 제출시 첨부되는 서류 추가 -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에 따라 신설되거나 예산액이 증액된 사업과 관련되는 성과에 대한 별도 보고서	

II. 미첨부 근거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34조 (예산안의 첨부서류)	제1호: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0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0억원 미만인 경우
	안 제85조의7제2항 (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제출)	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으로 신설 또는 예산이 증액된 사업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예산안 등의 첨부서류에 추가할 경우 인쇄비 등의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
 - 개정안 부칙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경우 추가 재정소요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발생할 것으로 전제
 - 최근 5년(2019년~2023년) 추가경정예산 편성 횟수는 총 9회(평균 1.8회)로 연도별 편차가 존재하며, 비용추계 기간 동안 매년 1회 발생할 것으로 전제

[표 1] 최근 추가경정예산 편성횟수: 2019~2023년

(단위: 횟수)

	2019	2020	2021	2022	2023	합계	연평균
추가경정예산 편성횟수	1	4	2	2	—	9	1.8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- 기획재정부의 2024년도 국가회계제도 운영비 중 국가결산보고서(부속서류 포함 총 136권¹⁾)의 제작·인쇄비 세부내역²⁾을 토대로 예산안 첨부서류로 추가되는 추가경정예산 관련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2권의 인쇄비를 추계

- (1종당 인쇄비용) 국가결산보고서 136권에 대한 2024년 인쇄비 예산은 총 313,155,500원으로 결산보고서 1권당 인쇄비는 2,302,614원임. 추계기간 동안 동 비용이 고정되어 유지될 것으로 가정

-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연평균 10억원 미만(연평균 4.6백만원)으로 예상되며, 이는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1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[표 2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5~2029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5	2026	2027	2028	2029	합계	연평균
추가경정예산 관련 성과계획서 및 성과 보고서를 예산안 등 첨부서류로 추가	4.6	4.6	4.6	4.6	4.6	23.0	4.6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1)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인쇄 세부내역에 따르면 국가결산보고서는 총 15종이며 종별 권수를 적용하면 총 136권임(기획재정부,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(Ⅱ-1): 일반회계·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, 2023, p.381.)

2) 기획재정부,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(Ⅱ-1): 일반회계·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, 2023, p.370.

국회예산정책처	추계세제총괄과
과	장 권아영
추계세제분석관	태정립
연 락 처	02-6788-4652
	jitae@nabo.go.kr
